



제 432회 국회 (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방위산업 육성 및 방위산업물자등 수출 진흥기금 설치〉
■ 추미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160호)

2026. 2.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문위원 임명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참고사항	1
IV . 검토의견	2
1. 방위산업 육성 및 방위산업물자등 수출 진흥기금 설치(안 별표 2)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추미애의원 등 16인

나. 발 의 일 : 2026. 1. 19.

다. 회 부 일 : 2026. 1. 2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방위산업을 육성하고 방산물자등의 수출진흥을 촉진하기 위한 「방위산업 육성 및 방위산업물자등 수출 진흥기금법안」의 제정을 통해 방위산업 육성 및 방산물자등 수출진흥기금을 신설하고자 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III.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추미애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위산업 육성 및 방위산업물자등 수출 진흥기금법안」(의안번호 제1616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IV. 검토의견

1. 방위산업 육성 및 방위산업물자등 수출 진흥기금 설치(안 별표 2)

현행	개정안
○ 별표 2 <신설>	○ 별표 2 - 방위산업 육성 및 방위산업물자등 수출 진흥기금법 (방위산업 육성 및 방위산업물자등 수출 진흥기금)

현행법 제5조¹⁾에 따라 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로써 설치하되,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따른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추미애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위산업 육성 및 방위산업물자등 수출 진흥기금법안」(의안번호 제1616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여 ‘방위산업 육성 및 방위산업물자등 수출 진흥기금’의 설치 근거를 「국가재정법」 별표에 추가하려는 것임.

1) 「국가재정법」 제5조(기금의 설치) ① 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로써 설치하되,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따른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방위산업 육성 및 방위산업물자등 수출 진흥기금'의 주요 내용]

구 분	내 용
법률명	「방위산업 육성 및 방위산업물자등 수출 진흥기금법안」
기금명	방위산업 육성 및 방위산업물자등 수출 진흥기금
재 원	◦ 정부의 출연금 ◦ 정부가 아닌 자의 출연금 ◦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기술료 납부금 ◦ 방위산업 육성 및 방위산업물자 등 수출 진흥 부담금 및 가산금 ◦ 차입금 ◦ 기금 운용수익금 ◦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용 도	◦ 방위산업체 등에 대한 자금 융자 및 출자 ◦ 방위산업체 등의 금융 비용 지원 및 보증
관 리	◦ 국방부장관

「방위산업 육성 및 방위산업물자등 수출 진흥기금법안」은 방위산업 육성과 방산물자 수출 진흥에 특화된 전략적·지속적인 재정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하여 방위산업 육성 및 방위산업물자등 수출 진흥기금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우리나라 방위산업은 국가 안보 유지와 자주국방 역량 확보에 기여하는 한편, 첨단기술 활용과 부가가치 창출을 통해 국가 경제와도 연관성을 갖는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음.

최근 국제 안보 환경의 변화와 지정학적 갈등, 첨단무기 수요 증가 등으로 세계 방위산업 시장이 확대되는 추세이며, 이에 따라 국내 방위산업의 수출 경쟁력 제고와 글로벌 공급망 참여를 위한 정책적 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정부는 방산기술 개발, 산업 기반 조성, 국방 중소·벤처기업 지원 등 관련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방위산업의 높은 초기 투자비용, 장기간의 투자 회수 구조, 수출시장 불확실성 등 산업적 특성으로 인해 정책 효과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도 있음.

아울러 방위산업은 국가 안보와 연계된 특수한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방위산업 육성 및 방산물자 수출 진흥을 위한 장기적·전문적 재정 지원체계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방위산업 육성 및 방위산업물자등 수출 진흥기금을 설치하여 안정적인 재원 조달 및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방위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방산물자 수출 확대를 도모하려는 취지임.

동 개정안과 관련하여, 기획예산처는 범정부 협의를 거쳐 방산을 포함한 전략산업 중심의 수출 기반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전략수출금

융지원에 관한 법률안」(한정애의원 대표발의, '26.1.23.)이 발의되어 있으며, 관련 법률안과 병합하여 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임.

방위사업청은 법안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개정안에 따른 기금은 방사청이 수행중인 사업 및 재정부에서 조성추진 중인 전략수출금융 기금과 목적 및 기능이 중복되는 바, 사업운영의 효율성 및 지원의 실효성 등 고려 법안의 병합 등을 포함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있는 자금이므로, 과도한 기금설치 방지, 재원의 효율적 배분 등을 고려하기 위하여 「국가재정법」 제14조²⁾에서는 중앙관서의 장이 기금을 신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① 기금의 재원과 지출사업 간 연관성, ② 신축적인 사업추진의 필요성, ③ 재원조달과 사업추진의 안정성, ④ 새로운 기

2) 「국가재정법」 제14조(특별회계 및 기금의 신설에 관한 심사) ①중앙관서의 장은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특별회계 또는 기금을 신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특별회계 또는 기금의 신설에 관한 계획서(이하 이 조에서 “계획서”라 한다)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신설의 타당성에 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 기금에 대하여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고,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제4호 및 제5호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자문회의에 자문하여야 한다.

1. 부담금 등 기금의 재원이 목적사업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을 것

2. 사업의 특성으로 인하여 신축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

3.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원조달과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

4. 일반회계나 기존의 특별회계·기금보다 새로운 특별회계나 기금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5.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거나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금 도입의 상대적 효과성 여부를 심사하도록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국가재정법」 개정안 심사 시 위 요건에 부합하는지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임.

이에 개정안이 위 요건에 부합하는지 살펴보면,

먼저 ‘기금의 재원과 지출사업 간 연관성’과 관련하여, 방위산업 육성 및 방위산업물자등 수출 진흥기금의 주요 재원은 「국방과학기술 혁신 촉진법」에 따라 징수된 기술료의 10분의 1과 방위산업체 영업이익의 100분의 1 범위에서 징수된 부담금으로 구성되며, 동 기금은 이를 군수품 국산화 개발과 핵심기술·부품 개발 등 방위산업 분야 연구개발(R&D) 지원과 방위산업 물자 등의 수출을 위한 자금 융자 및 외국 정부·기관 대출에 대한 채무 보증 등에 활용하는 구조로, 업체의 수출 성과가 기금 재원으로 환류되고, 해당 재원이 다시 수출 경쟁력 강화에 사용되는 순환적 구조를 형성하고 있어, 기금의 재원과 지출 용도 간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음.

다음으로 ‘신축적인 사업 추진의 필요성’ 및 ‘새로운 기금 도입의 상대적 효과성’ 측면에서 보면, 현재 세계 방위산업 시장은 전 세계적인 안보 불안정과 지정학적 갈등 심화로 인해 첨단무기 수요가 급격히 확대되는 등 변동성이 크고, 방위산업은 상황 변화에 따라 적시에 자금을 투입할 수 있는 신축적인 운용이 요구되므로, 기금 신설의 필요

성이 인정되는 면이 있음.

마지막으로 ‘재원조달과 사업추진의 안정성’에 대해 살펴보면, 동 기금은 정부의 출연금 및 융자금뿐만 아니라 정부 외 주체의 출연금, 기술평가 수입, 방위산업체의 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한 다층적 재원 구조를 가지고 있고, 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발생하여 적립금이 부족할 경우 정부가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도록 하여 기금의 재정적 안전성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음. 또한, 사업추진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금의 사용을 방위산업설치, 원자재 비축, 군수품 국산화 개발 등 법정 용도로 제한하고, 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방부 장관 소속으로 기금운용심의회를 운영하도록 하여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음.

한편, 개정안은 국방위원회 소관인 「방위산업 육성 및 방위산업물자등 수출 진흥기금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동 위원회의 심사과정을 감안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겠음.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 2 <u><신 설></u>	별표 2 <u>72. 「방위산업 육성 및 방위산업물 자등 수출 진흥기금법」</u>

참고

방산육성 관련 기금 신설 법안 비교

구분	방위산업·방산물자 수출진흥기금	전략수출금융기금	
설치 근거	방위산업 육성 및 방위산업물자등 수출 진흥기금법(안) (추미애의원 대표발의, '26.1.19)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안) (한정애의원 대표발의, '26.1.22)	
설치 목적	방위산업을 육성하고 방위산업물자등의 수출을 진흥하기 위함	대규모 수출금융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국가적 금융 지원 등으로 발생한 수출기업의 이익 일부를 향후 수 출금융 및 산업생태계 지원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함	
주무 부처	국방부	재정경제부	
관리 주체	- (위탁근거만 마련)	수출입은행	
조성 재원	1. 정부의 출연금 2. 정부가 아닌 자의 출연금 3.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에 따른 기술료 4. 수출진흥부담금* 및 가산금 5. 차입금 6. 기금의 운용수익금 7.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방산업체는 전년도 결산상 영업이익의 100분의 1범위 정부지원을 받은 방산관련 일반업체 또는 방산관련이 없는 일반업체는 방산물자등을 국외로 수출한 금액의 100분의 1 범위내에서 수출진흥부담금 납부	[수출금융지원계정]	[산업생태계지원계정]
		1. 정부의 출연금 2. 정책금융기관의 출연금 3. 전략수출금융기금 채권 4. 전략수출상생기여금* 5. 정부, 한국은행 등으로부터의 차입금 6. 수출금융지원계정 운용수익금 7. 산업생태계지원 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또는 차입금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금 정부지원을 받고 계약이 체결된 자는 해당지원이 집행된 시점마다 집행금액과 1천분의 10 범위내에서 전략수출상생기여금 납부	1. 정부납부기술료 2. 회수자금 3. 정부, 한국은행 등으로부터의 차입금 4. 산업생태계지원 운용수익금 5. 수출금융지원계정 으로부터의 전입금 또는 차입금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구분	방위산업·방산물자 수출진흥기금	전략수출금융기금	
용도	- 방위산업체 등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및 출자 - 방위산업시설의 설치·이전·교체·보완 또는 확장 - 원자재의 구매 및 비축 - 군수품의 국산화를 위한 개발 - 방위산업물자등의 수출 - 핵심기술 및 부품 개발 - 연구개발 및 유희시설 유지 - 방위산업체의 운영 - 국방중소·벤처기업의 운영 및 시설 유지·관리 - 유희화된 방위산업물자 등의 생산전용 설비·기기의 철거 또는 폐기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이자의 차액 지원 -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은 경우 채무 보증 - 외국정부, 외국 금융기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은 경우 채무 보증 - 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출자·투자 - 공자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나 비용의 지원	- 전략수출을 위한 수출 금융지원 - 수출금융지원계정의 운영비용 - 차입금과 그 이자의 상환 - 전략수출금융기금채권 원리금 상환	- 중소·중견 수출기업의 기술·수출 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 - 산업생태계지원계정의 운용비용 - 중소·중견 수출기업의 기술·수출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집합투자기구, 신기술사업조합 등에 대한 출자·투자 - 차입금과 그 이자의 상환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여유 자금 운용 범위	- 국채·공채 그 밖에 유가증권의 매입 - 금융기관에의 예치 - 공공자금관리기금에의 예탁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국채·공채 등의 매입 - 금융기관에의 예치 또는 대여 - 전략수출금융기금운용심의회가 정하는 방법	

문 의 처
02)6788-5151